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5,997,488,168	179,924,645
일반 회 계	5,529,076,352	165,872,291
특 별 회 계	468,411,816	14,052,354
기 타 특 별 회 계	468,411,816	14,052,354
· 학 교 용 지 부 담 금	50,685,314	1,520,559
· 지 역 자 원 시 설 세 특 별 회 계	4,900,000	147,000
·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333,128,995	9,993,870
· 소 방 안 전 특 별 회 계	79,697,507	2,390,92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(계속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5 조 (명시이월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,811,330천원으로 하고
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6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4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
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기준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난대책 및 복구비